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14
------	------

발의일자 : 2022. 9. 6.  
발 의 자 : 장규권 의원  
찬 성 자 : 윤영희 의원

## 1. 제안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근거 조문을 목적 조항에 반영하고 약칭된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 나.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 2022. 9. 7 ~ 9. 14.
-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서 <u>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u>----- ----- ----- -----.</p>
<p>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u>의원</u>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u>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 ----- -----.</p>
<p>1. ~ 3. (생략)</p> <p>4. <u>의회의</u>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 -----.</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제13조(검직신고) ① ~ ③ (생략)</p> <p>&lt;신설&gt;</p>	<p>제13조(검직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검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u>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u>에 공개하여야 한다.</p>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 2022. 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07.17>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충실한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5. 구민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공명한 책임을 진다.

**제3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전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권남용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례금 수수 제한)**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검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항 신설 '09.07.17> <개정 2022.1.10.>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09.07.17>

**제15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조 변경 '09.07.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09.07.17>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07.17)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34호, 2022.1.12.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43조(겸직 등 금지)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